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신청 관련 자주묻는 질문 및 답변[FAQ]

2026. 1. 30.

1 중요사항

Q1. 투자형 사관학교가 무엇인가요?

A1. 자체 직접투자 기능이 있는 민간 액셀러레이터(AC)에 입교생 선발권 등의 자율 운영 권한을 부여하여, 후속투자까지 책임보육 운영 방식으로 창사 운영

Q2. 발표심사 시 발표자료(PPT 등)를 제출해야 하나요?

A2. 사업계획서와 PPT 모두 발표 자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PPT로 발표자료를 준비하셔도 우대, 가점은 없습니다.

Q3. 투자형 창사와 지역특화형 창사에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3. 불가능합니다. 금번 모집공고에서 신청 가능한 청년창업사관학교는 1곳으로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Q4. 표절검사는 무엇이며, 어떻게 운용되나요?

A4. 불법 브로커의 개입과 사업 아이템의 도용 등을 검증하기 위해 표절검사 프로그램을 통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표절률을 검사합니다.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의 표절률이 높은 경우 평가위원회 검토 등을 통해 탈락이 가능합니다.

Q5. 발표심사 시 전 직장 경력을 확인하나요?

A5. 경력 허위기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부분으로 발표심사 시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신 경력사항에 대해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표심사 전 신청자(대표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자료제출을 필수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자격요건

① 연령 및 업력 관련

Q1. 청년창업사관학교는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만 신청 가능한가요?

A1. 그렇습니다.

* 1986년 1월 31일 이후 출생자(1.31일 출생자 포함) 신청 가능합니다.

Q2. 추가과정은 운영하지 않나요?

A2. 그렇습니다. 26년은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추가과정은 모집하지 않습니다.

Q3.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던 중 공고 일 이전 폐업을 했습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A3. 예비창업자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이종창업으로 지원제외업종이 아닌 창업을 계획 중인 경우

Q4. 업력 3년을 초과한 사업자(개인·법인)를 포함하여 다수 사업체를 운영 중입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A4. [붙임1]에 따라 창업 후 3년 이하 창업기업으로 해당할 경우 기창업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여부를 창업기업확인서 발급(cert.k-startup.go.kr)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5. 경험창업자의 경우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까지 신청 가능한가요?

A5. 원칙적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만 청창사 입교 신청이 가능하나, 경험창업자(재창업, 성장경험, 정책경험 등 창업 역량을 보유한 자)의 경우,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경험창업자로 신청 시에도 창업 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공고문 내 경험창업자 구분 참고 바람

② 신청 제외 대상 관련

Q1. 중앙정부와 도(지자체)가 함께 예산을 들여 운영되는 사업의 경우 어떤 기준(방법)에 의해 중앙정부, 지자체 사업을 구분할 수 있나요?

A1. 예산투입비율이 높은 곳(중앙정부, 지자체)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사업 운영기관의 담당자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예산 구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2. 지원사업 중 창업사업화 사업이 아닌 다른 지원(R&D, 마케팅 등)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지원으로 신청이 불가능가요?

A2. 중복지원 판단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판단은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현재 모집 공고 진행 중인 청년 CEO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자체 지원이라고 합니다. 창업사관학교 보다 합격 발표가 일찍 나는데, 최종 협약은 한곳과 진행해야 하는가요?

A3. 지자체 지원사업의 경우 본 사업의 중복여부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Q4.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경우, 모두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하나요?

A4. 신청자 외 공동대표(또는 각자대표)는 39세 초과하더라도 신청자가 39세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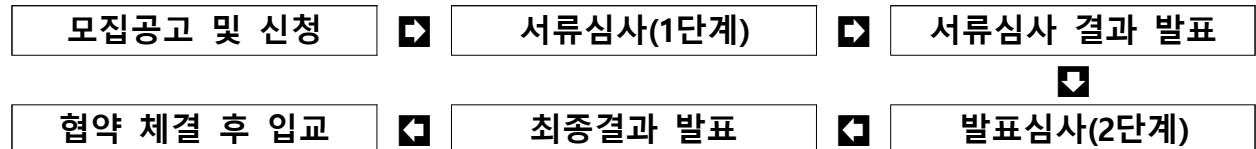
③ 신청 및 선발 절차 관련

Q1. 입교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접수받나요? 오프라인 접수는 안되나요?

A1. 오프라인 신청·접수는 불가합니다. K-스타트업(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만 가능합니다.

Q2. 사업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2.



Q3. 사관학교가 여러 군데인데, 입교지역은 합격 후 변경할 수 있나요?

A3. 신청 시 선택한 사관학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Q4. 선발은 사관학교별로 진행되나요?

A4. 선발절차는 각 사관학교별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본교(안산)으로 신청하시면 본교(안산)에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선발합니다.

Q5. 신청서 양식의 페이지수, 글자수에 제한이 있나요?

A5. 신청서 상의 사업계획서는 10페이지 이내(본문 1. 문제인식부터~) 작성을 권장드립니다. 그 외 참고자료 첨부 분량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용량은 최대 30MB로 제한되어 있으니 작성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Q6. 발표심사는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준비하면 되나요?

A6. 발표심사는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사업모델(BM)에 대한 기술성, 실현 가능성, 성장 가능성, 추진계획 등을 확인하며 기업가정신, 사업화 역량, 및 사업화 추진 계획 또한 확인합니다.

Q7. 입교신청서 외에 별도의 사업계획서(파워포인트 등)를 제출해도 되나요?

A7. 사업계획서는 입교신청서 양식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발표심사의 경우 사업계획서와 PPT 모두 발표자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PPT로 발표자료를 준비하셔도 우대, 가점은 없습니다.

Q8. 바쁜 일이 있어 발표심사에 대표자(신청인) 외 팀원 또는 직원이 대신 참가할 수 있나요?

A8. 불가합니다. 대표자(신청인)외에 타인(팀원 또는 직원 등)이 발표할 수 없습니다.

Q9. 저희 회사는 공동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9. 공동대표 중 1인을 신청인으로 하고, 나머지 공동대표에 대한 인적사항은 신청 시 시스템 등재 및 사업계획서 상 기재 부탁드립니다.

Q10. 저희 회사는 각자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명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A10. 동일 회사의 지원은 불가하므로 각자대표 중 한 분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④ 기타

Q1. 온라인 신청 시 기술분류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A1. 유형(하드웨어)을 포함하는 창업아이템은 제조업으로, 무형(소프트웨어)의 제품은 지식서비스업으로 분류하며, 제조업의 세부분류는 핵심기술(차별화 기술)에 따라 분류합니다.

* 하드웨어 제작을 포함하는 S/W 개발 → 제조업(정보통신, 전기.전자, 기계.재료 등)

** 하드웨어를 포함하지 않는 S/W, 디지털컨텐츠 등 → 지식서비스업

Q2. 앱, S/W 개발도 신청 가능한가요?

A2. 앱, SW 개발도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영위중인 사업 또는 향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 아이템이 지원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3. 입소형과 준입소형에 대한 선택은 언제 하나요?

A3. 협약 후 입소형과 준입소형에 대해 선착순으로 선택가능합니다.

2 사업비

Q1. 사업비 구성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 A1.** 정부지원금을 100,000,000원으로 가정할 경우,
- ① 총사업비는 정부지원금을 70%로 나눈다.
(ex. 100,000,000원/70%=142,857,143원)
 - ② 현금은 총사업비의 10%를 곱한다. * 천원단위에서 절상하여 만원단위로 부담
(ex. 142,857,143원×10%=14,290,000원)
 - ③ 현물은 총사업비에서 정부지원금과 현금을 뺀다.
(ex. 142,857,143원-100,000,000원-14,290,000원=28,567,143원)

Q2. 사업비는 나중에 갚아야 하나요?

- A2.** 최대 1억원 이내로 지원되는 사업비는 상환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청년 창업자의 사업비 유용, 불성실 탈락, 동일성 유지의무 위반 등 제재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비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3. 사업비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 A3.** 사업비는 청년창업자에게 지급되지 않으며 거래당사자(위탁개발업체 등)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청년창업자가 사업비카드 사용 및 세금계산서 내역을 제출하면 해당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물품 및 용역 등 결과물을 확인 후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단, 사후환급이 가능한 부가세 등은 사업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교 O/T 시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Q4. 현물 부담은 무엇인가요?

- A4.** 현물은 신청과제의 참여인력(청년창업자, 임직원) 인건비로 계상 됩니다. 개념적으로 현물납부는 참여인력이 창업을 하지 않고 취업을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인건비를 산출하여 그 인건비만큼 창업활동에 투자되므로 이를 청년 창업자 부담금으로 인정한다는 개념입니다.

Q5. 청년창업자 부담금(현금 10%)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A5.** 불가합니다. 현금 10%는 직접 부담하셔야 하며, 연계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Q6. 입교기업 간 사업비를 지급하는 거래가 가능한가요?

- A6.** 입교기업 간 사업비를 지급하는 상호거래, 입교기업 대표자가 현재 재직 중 이거나 사업 참여 전 재직(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한 기업과의 거래는 불가합니다. 청창사 졸업기업과의 거래는 중진공과 사전 협의 후 가능합니다.

붙임1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

신청기업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이종	창업아님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 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국가데이터처 통계분류포털 : kssc.kostat.go.kr
-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 성실경영실패자 : 중진공의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성실경영심층평가(동종업종)를 통과한 자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1항 3호에 근거하여 성실경영실패자로 인정받은 건에 한함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rechallenge.or.kr
- ※ 기존 개인사업자의 폐업사실은 폐업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등을 통해 확인
- ※ 신청가능 여부 : "창업여부"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로서 위 기준에 해당. 단,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만 청상사 입교 신청 가능(경험창업자는 7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
- ※ 경험창업자의 창업 여부 적용 :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 적용

붙임2 중소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동시 수행 불가한 창업지원사업 목록

연번	창업지원사업명	소관 부처
1	•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2	• 재도전성공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3	• 지역특화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4	• 창업중심대학	중소벤처기업부
5	•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
6	•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7	• 민관오픈이노베이션	중소벤처기업부
8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중소벤처기업부
9	• 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 (프리팁스, 팁스, 포스트팁스)	중소벤처기업부
10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11	• 로컬크리에이터육성사업	중소벤처기업부

붙임3**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이 불가한 중기부 기 창업사업**

* 동시 수행 불가한 창업지원사업 목록

구분	창업지원사업명
1	○ 창업성공패키지(舊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
2	○ 초기창업패키지(舊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사업화지원, 창업아이템 사업화
3	○ 창업도약패키지
4	○ 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 (TIPS창업사업화) - 단, Pre-TIPS의 경우 지원가능(동시수행은 불가)
5	○ 창업맞춤형사업 - 실험실창업 지원사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연구원특화 예비창업자 육성사업, 연구원 창업프로그램, 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사업,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6	○ 민관오픈이노베이션
7	○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8	○ 창업중심대학
9	○ 지역특화창업패키지
10	○ 재도전성공패키지
11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